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9회 정례회
'18. 12. 04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 전부개정규약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의 지방자치회관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획단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한 조항 삭제 및 중앙부처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, 시·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약을 변경 및 폐지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
 - 4개 시·도가 합의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(안)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 및 상생협력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설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목적과 설치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복잡한 목적 조항을 법령입안

심사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목적과 설치,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충청권 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

나. 충청권 행정협의회 기능·조직(안 제3조 및 제4조)

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,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결정하기 위하여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두며,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시·도별 직제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함.

다. 실무협의회 및 경비부담(안 제13조 및 제14조)

-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

라. 규약개정 등(안 제15조)

-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위원 전원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.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5년부터 설치·운영 중인 충청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4개 시·도(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)가 지난 11월8일 공동으로 협의·작성한 본 개정안에 대해 절차상 고시 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한 것임.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,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(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)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음.
- 안 제1조(목적) 및 안 제2조(설치)는, 총칙에 해당하는 목적규정과 실체규정인 충청권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규약 제1조를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한 것임.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충청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)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를 말하며, 이하 “구성단체”라 한다)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

- 현행 규약 제2조(사무소의 위치)는,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의·결정에 따라, 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사무소가 2019년 7월, 세종시 소재 지방자치회관에 지속 입주하게 된 바,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삭제함.

현 행	개정안
제2조(사무소 위치)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내에 둔다.	(삭 제)

※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은 2013년 12월12일 충청권 시·도지사 협의로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사무국 역할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윤번제 방식에 따라 2016년(충남), 2017년(대전), 2018년(세종)에 둠.

- 안 제3조는 협의회 기능을 안 제4조는 협의회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, 안 제5조는 협의방법을, 안 제6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등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항 배열 및 일부 조 제목, 문구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, 현행 규약과 내용상 차이는 없음.
- 안 제8조는 간사의 직위를 현행 ‘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’에서 ‘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장’으로 변경하고, 안 제13조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‘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’에서 ‘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실·국장’으로 변경한 것은, 향후 직위명칭의 변경에 따른 규약 개정의 필요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2조는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‘안전행정부장관’을 ‘행정안전부장관’으로 개정하였음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으며,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.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권 4개 자치 단체의 협의를 거쳐, 존치 필요성이 없는 사무소 위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참고자료> 충청권행정협의회 운영 현황

□ 일반현황

- 설립 : '95. 3. 3.
- 법적근거 : 『지방자치법』 제152조, 『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』
- 설립목적 :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
- 조직 : 협의회(시·도지사), 실무협의회(기획관리실장)
- 운영 : 회장 시·도 (직제순에 의한 윤번제)
 - ※ 충북('15) → 충남('16) → 대전('17) → 세종('18) → 충북('19)
- 주요업무 : 충청권 광역행정 발전 및 개발사업 등 공동협력 대응 등
 - ※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 : 충청권 상생협력기구 설치·운영 합의('13.12.12)

□ 2017년 ~ 2018년 추진현황

- '17년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실무협의회 : 3회 개최
 - '17년 기획단 주요업무추진상황, 예산안, 공동용역 추진(2건) 보고 등
 - * 충청권 근대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, 충청선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
- '17. 9. 14. 제26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개최 : 공동합의문 의결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대덕특구 ~ 세종시(연서면) 일원 광역도로 건설 | ⑤ 중부고속도로 남이~호법 확장 |
| ②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건설 | ⑥ 세종역~청주국제공항 BRT 도로 건설 |
|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| ⑦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생태복원클러스터 조성 |
| ④ 공주~세종~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| ⑧ 보령~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|

- '18년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실무협의회 : 3회 개최
 - '18년 기획단 주요업무추진상황, 예산안, 공동용역 추진(1건) 보고 등
 - * 충청권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 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
- '18. 11. 22. 제27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개최

- | |
|---|
| ①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 개최 시·도민 의견 취합 |
| ②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대응 |
| ③ 지역인재 채용 관련 혁신도시법 개정예 공동협력 권역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|
| ③ 민선7기 충청권 공동공약 시행계획 마련 |